무악 제3학사(의료원동) 이용내규

제정 1998.06.10.
개정 2003.11.18.
개정 2019.01.09.
개정 2022.01.01.
개정 2025.03.0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연세대학교 무악 제3학사 이용내규(이하 '내규'이라 함)는 연세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악 제3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운영내규는 무악 제3학사에 입사 중인 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그 외 무악 제3학사에 입사 중인 의료원 소속 전공의, 간호사 등은 별표2 무악 제3학사 게스트하우스(의료원동) 이용내규를 적용한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본 이용내규 제22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3조 이용]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장 입사

[제4조 입사자격]

①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치의예과, 치과대학,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2.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거주자 또는 해외거주 학부, 일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재학생
3. 직전 학기의 성적이 1.7/4.3 이상, 대학원생은 2.0/4.3 이상인 자
4. 기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
3. 휴학자
4. 생활관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자
5.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입사선발]

기숙사의 입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신규선발, 연장승인, 추가선발이 있다.

① 신규선발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 최초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추가선발은 결원발생 시 수시로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매 학기의 결원자 보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 입사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

[제6조 입사서류]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신청서(인터넷으로 신청)
2.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가족의 해외 거주 증명서 1부)

[제7조 입사등록]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납부를 마친 후 입사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흉부 X선) 결과서 1부

[제8조 입사허가기간]

생활관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를 각각 선발하며, 거주기간은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정기입사의 허가기간은 1년(개학일로부터 당해 연도 학사일정 종료일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② 2학기 추가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연도 학사 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기존거주생 중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도 거주하려는 사생은 연장승인을 통해 잔류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기숙사 방배정]

① 기숙사의 방배정은 생활관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되,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추가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생활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장 입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제10조 납부금]

① 입사자의 기숙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며,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

②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에는 공식 입사일 기준으로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③ 단, 군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

[제11조 출입카드]

① 입사가 허가된 입사자는 출입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입사자는 전항의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2조 금지사항]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술 반입 포함), 도박, 폭행, 절도, 성추행, 성희롱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 각종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객실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비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객실,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시설물을 손상·파괴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광고물 무단 전시·배포하는 행위
8. 공공이용물(예: 청소기, 셀프키친 집기, 다리미 등)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9.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10.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
11.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12.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13. 외부인을 허가 없이 건물 내 및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
14. 사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15. 방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16. 공동 시설 점검 및 지도에 불응 또는 폭언 하는 행위
17. 공동거주자의 생활패턴을 존중하지 않고,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18.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 협조의무]

① 입사자는 개인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공동거주자의 생활패턴을 존중하고,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생활관장은 사감단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사감단이 개인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사생이 재실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제14조 실비변상의무]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열기의 사용]

①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스탠드,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충전기, 전기면도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그 외 반입 가능 및 금지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 문단속]

①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②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진다.

제 4장 벌점

[제17조 벌점부과]

① 벌점은 별지의 <벌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 동안 유효하며,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 기준표 참조>

[제18조 상점부과]

① 상점은 별지의 <상점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

③ 다만,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점기준표] (별표1)

번호	내용	상점
1	생활관 화재대피훈련 온라인 교육 이수자	1점
2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 (각종 선행활동, 봉사활동)	0.5~2점

[제19조 제재]

생활관장은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퇴사처분 : <벌점 기준표>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벌점기준표] (별표1)

번호	내용	벌점
1	기숙사내에서 폭행,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	퇴사
2	대리입사자 및 제공자, 무단 입사(숙박)자 및 제공자	퇴사
3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퇴사
4	기숙사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5점
5	기숙사내에서 음주(술병 반입포함), 흡연(호실내 꽁초 발견포함) 도박행위	5점
6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	5점
7	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점
8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5점
9	각 사생동의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5점
10	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 객실 내 키홀더, 분전반을 조작(상시전원), 방안의 시설물을 임의 이동 또는 파손하는 행위	3점
11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2	출입카드 없이 무단출입한자,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자	3점
13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	2점
14	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	2점
15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빈 객실, 폐쇄 조치된 공간, 공용시설 이용시간 이후 출입)	2점
16	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	2점
17	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2점
18	공동거주자의 생활패턴을 존중하지 않고,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2점
19	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1점~퇴사

제 5장 퇴사

[제20조 퇴사 절차]

① 입사전 퇴사: 공식입사일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1일전까지 학사포털에서 입사전 취소 신청해야 한다.

② 중도퇴사: 생활관을 중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포털에서 퇴사신청하고, 신청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③ 만기퇴사: 만기퇴사자는 퇴사일에 학사포털에서 MOVE-OUT/퇴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강제퇴사: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⑤ 입사 중 휴학자는 휴학 후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⑥ 퇴사자는 퇴사 시 출입카드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강제퇴사처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및 생활관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
2.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학교 등록 미필자
4.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한 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④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제1항의 1,2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에 강제퇴사 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20조에 의하여 강제퇴사를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

제 6장 무악 3학사(의료원동) 운영위원회

[제22조 역할]

의료원동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방향 결정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간호사, 수련의의 입실인원 배분 등을 심의, 결정한다.

[제23조 구성]

① 위원장은 의료원 기획조정1부실장이 맡고, 간사는 의료원 전략기획팀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의료원 기획조정1부실장, 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부학장, 세브란스병원 간호1국장, 교육수련부장, 의료원 전략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 1항, 제9조 1항, 제10조 3항, 제11조 2항, 3항, 제12조 1항, 2항, 3항, 제14조 1항 ⑬, ⑭, ⑮, 제18조 1항 ①, ③, 벌점 기준표 3항, 4항, 11항, 12항, 3항, 15항, 19항, 제27조, 제28조)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23조 2항, 제28조 1항, 2항)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4조 1항, 제5조, 제27조, 제28조 1항, 2항)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1조, 제4조 1,2항, 제5조 1,2항, 제6조 1항, 제8조 1항, 제10조 1,2,3,4항,제11조 1,2,3항, 제12조 1,2,3,4항, 제13조 2,3항, 제14조 1항, 제18조 1항, 제21조 2항, 벌점기준표 6,17,22, 제23조 1,2,5,6항, 제24조 2항, 제25조 3항, 제26조, 제6장 명칭개정, 제27조, 제28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수정, 제5조 수정, 제6조 수정, 제7조 수정, 제8조 수정, 제9조 수정, 제10조 수정, 제11조 수정, 제12조 1,4,5,9,16,17, 제13조 2항, 제15조 수정, 제17조 수정, 제18조, 제19조 수정, 제20조 수정, 제21조 수정)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